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826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A조합

[redacted]

피 고 B군수

[redacted]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9. 10.

주 문

1.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전남 C면, D면, E면 일원을 구역으로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서, 전남 F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2008. 9. 4. 1,713㎡ 규모의 G마트 건물(이하 '이 사건 마트'이라 한다)을, 2008. 9. 11. 84㎡ 규모의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각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2008. 12. 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 마트, 주유소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판단하고, 2008.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마트 중 생필품 매장(728.3㎡)의 조합원 사용비율은 36.5%, 이 사건 주유소의 면세유 비율은 20.8%에 불과하고, 조합원·비조합원이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마트의 생필품매장과 이 사건 주유소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12. 10. 11.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마트의 생필품매장과 이 사건 주유소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마트의 생필품 매장과 이 사건 주유소 및 나머지 부분에 안분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마트의 생필품 매장과 이 사건 주유소의 취득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액 상당액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정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원고의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용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나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이고, 이 사건 마트의 조합원 이용비율은 69.6%, 이 사건 주유소의 조합원 이용비율은 88.9%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는 비조합원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가격도 다른 일반적인 매장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의 조합원 이용 비율은 36.5%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합원의 이용비율에 따라 원고의 고유업무인지가 달라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설립목적을 규제하고 있고,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제5조 제3항)고 규정하여 그 업무범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57조는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그중에는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법이 금지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해석되고, 또한 위 법은 사업을 비조합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되, 다만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뿐이므로(제58조 제1항), 어느 사업에 대하여 비조합원이 조합원과 다름없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규와 정관에 합치되는 한 이를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 원고의 정관 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으로 원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과 앞에서 살펴본 원고의 정관 제141조 제2항, 제5조 제2호 (가)목은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의 비조합원 이용은 물론 그 비율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비조합원이 조합원과 다름없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 사업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조합원 이용비율에 따라서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 사업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속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나.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를 포함하는 경제사업소, C 본점, D 지점, E 지점, H지점의 손익을 합산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원고의 당기 순이익과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계연도	구분		금액(원)
2008년	당기순이익		370,752,385
	배당금	출자배당금	149,042,859
		이용고배당금	74,521,430
		합계	223,564,289
2009년	당기순이익		420,686,000
	배당금	출자배당금	170,457,000
		이용고배당금	85,229,000
		합계	255,686,000
2010년	당기순이익		508,217,000
	배당금	출자배당금	197,820,000
		이용고배당금	98,910,000
		합계	296,730,000
2011년	당기순이익		604,948,000
	배당금	출자배당금	221,855,000
		이용고배당금	122,320,000
		합계	344,175,000
2012년	당기순이익		673,070,881
	배당금	출자배당금	266,001,915
		이용고배당금	133,000,957
		합계	399,002,872
2013년	당기순이익		807,128,632
	배당금	출자배당금	279,002,921
		이용고배당금	181,351,898
		합계	460,354,819

나)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를 포함하는 경제사업소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손익은 다음과 같고, 경제사업소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나머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여 주었다.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원)	10,000,000원	-379,000,000	-278,000,000	-110,000,000	-67,000,000	143,000,000

다) 한편 원고의 경제사업소 전체 매출손익에서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가 차지하는 매출비용의 비율에 따라 추정한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의 손익은 다음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손익(원)	마트	-83,708,031	-355,913,629	-160,170,720	-6,616,709	23,043,829	218,683,465
	주유소	-9,653,188	-64,136,535	-71,234,064	-103,363,755	-128,690,171	-29,897,957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익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를 포함하는 경제사업소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위 적자를 보전하여 주었던 점, ③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를 포함한 원고의 전체 수익 중 절반 이상이 조합원에게 배당되었고 그 중 상당수는 이용고 배당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 사업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인 원고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 사업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판사 장우석

판사 류지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별지1

목록

순번	과세물건	세목	납기내금액(원)
1	F 건물	취득세	13,539,750
		등록세	17,327,920
		지방교육세	3,251,330
		농어촌특별세	1,353,960
		소계	35,472,960
2	F 토지	취득세	14,561,470
		등록세	16,574,940
		지방교육세	3,110,040
		농어촌특별세	1,456,140
		소계	35,702,590
3	I 건물	취득세	15,890,720
		등록세	7,245,890
		지방교육세	1,359,570
		농어촌특별세	1,589,060
		소계	26,085,240
4	I 토지	취득세	2,207,430
		등록세	2,516,380
		지방교육세	472,150
		농어촌특별세	220,730
		소계	5,416,690
합계			102,677,4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별지2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 경제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代)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